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7 주민세(법인세할)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1. [redacted]군수

2. [redacted]군수

3. [redacted]군수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0구합54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7.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897,700,640원의 부과처분 중 633,72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4. 7.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507,889,750원의 부과처분 중 412,243,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747,165,490원의 부과처분 중 240,23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982,948,010원의 부과처분 중 608,684,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7. 18.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565,820원의 부과처분 중 151,68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354,760원의 부과처분 중 317,48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897,700,640원(가산세 368,518,09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09,672,934원(가산세 209,173,144원 포함) 부분, ② 2011. 4. 7.자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1,507,889,750원(가산세 589,094,010원 포함),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747,165,490원,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982,948,010원, ③ 2012. 7. 18.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565,820원,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35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북로 160에 본점을 두고, [redacted]화력발전소, [redacted]화력발전소, [redacted]화력발전소, [redacted]양수발전소(상부댐과 하부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부댐은 [redacted]군에, 하부댐은 [redacted] [redacted]군에 설치되어 있다), [redacted]화력발전소, [redacted]화력발전소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6개의 사업장을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redacted]화력발전소를 '보[redacted]사업장'이라 하고, 다른 발전소도 소재지에 따라 '○○사업장'이라 한다).

나.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의2, 제1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30조의7, [redacted]시 시세 조례(2010. 3. 30. 조례 제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redacted]사업장과 다른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안분비율[1]

1)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에 따라 [redacted]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사업연도	신고·납부일	법인세(원)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비율(%)	[redacted]시 법인세할 주민세(원)
			[redacted]사업장	전체 사업장	[redacted]사업장	전체 사업장		
2004	2005. 4. 27.	69,896,642,401	774	1,993	359,856.39	691,538.18	45.4365	3,175,845,930
2005	2006. 4. 30.	72,836,456,620	807	2,030	363,019.34	811,656.93	42.2397	3,076,590,290
2006	2007. 4. 30.	61,388,740,300	882	2,160	359,346.89	792,585.41	43.0859	2,644,992,290
2007	2008. 4. 30.	76,033,941,178	940	2,191	363,554.11	805,890.26	44.0074	3,346,059,670

다. 그 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와 원고의 수정신고 과정을 거쳐 원고가 최종적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이 아래 [표2]의 '법인세 합계'란 기재 금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총액은 아래 [표2]의 '최종 납입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표2] (단위 : 원)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정기신고	2007. 11. 신고	2009. 4. 신고	최종납입액
2004	82,199,154,958	3,175,845,930	559,344,048	-347,168	3,734,842,810
2005	73,176,884,032	3,076,590,290	18,040,419	-3,660,846	3,090,969,860
2006	61,390,627,439	2,644,992,290	834,205	-752,896	2,645,073,600
2007	76,034,697,741	3,346,059,670		33,294	3,346,092,960

라. 피고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추가하여 ① 2009. 11. 11. [redacted]사업장과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잘못 산정되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정하여 2004년분부터 2006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하였고, ② 2009. 11. 13. 위 2009. 11. 11.자 납부고지시 누락된 세액이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하였으며, ③ 2009. 11. 30. 위 각 납부고지 세액 중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한 후 2009. 12. 9. 이를 환급하였고, ④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7. [redacted]사업장과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2005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하면서 위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을 취소하였으며, ⑤ 2012. 7. 18. 위 환급금결정에 따라 기환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2006, 2007년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의무 지연기간을 2009. 12. 1.부터 2012. 7. 16.까지 959일로 하여 산정하였다)를 납부고지하였다(이하 ① 2009. 11. 13.자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004년분 본세 및 가산세 897,700,640원 부과처분, 2011. 4. 7.자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005년분 본세 및 가산세 1,507,889,750원 부과처분, 2006년분 본세 747,165,490원 부과처분, 2007년분 본세 982,948,01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하고, ② 2012. 7. 18.자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006년분 가산세 467,565,820원 부과처분, 2007년분 가산세 492,354,760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3]

귀속연도	구분	일자	건축물 연면적(㎡)		추가고지액(원)				
			[redacted] 사업장	전체 사업장	본세	가산세			합계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소계	
2000	증액	2009. 11. 11.	602,814.21	928,653.49	360,486,060	72,097,210	178,873,180		611,456,450
	〃	2009. 11. 13.			168,696,490	33,739,300	83,808,400		286,244,1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4	**합계**				**529,182,550**	**105,836,510**	**262,681,580**	**368,518,090**	**897,700,640**
2005	증액	2009. 11. 11.	610,466.92	1,000,754.00	592,000,460	118,400,090	229,104,170		939,504,720
	〃	2009. 11. 13.			3,475,900	695,180	1,347,250		5,518,330
	〃	2011. 4. 7.	769,645.68	1,102,054.52	323,319,380	64,663,870	174,883,450		562,866,700
	합계				**918,795,740**	**183,759,140**	**405,334,870**	**589,094,010**	**1,507,889,750**
2006	증액	2009. 11. 11.	438,667.82	813,555.83	263,320,700	52,664,140	73,150,490		389,135,330
	〃	2009. 11. 13.			83,390	16,670	32,320		132,380
	①소계 (2009. 11. 13.까지)				263,404,090	52,680,810	73,182,810	125,863,620	389,267,710
	환급	2009. 12. 9.				-52,680,810	-73,182,810	-125,863,620	
	증액	②2011. 4. 7.	727,884.17	1,044,611.03	483,761,400	96,752,280	208,839,790	305,592,070	789,353,470
	가산세	③2012. 7. 18.			부과기준 본세액 263,320,700	52,664,140	109,309,610	161,973,750	
	합계				**747,165,490 (=①+②)**	**149,416,420 (=②+③)**	**318,149,400 (=②+③)**	**467,565,820 (=②+③)**	
2007	증액	2009. 11. 11.	501,136.52	885,122.17	438,280,410	87,656,080	73,631,100		599,567,590
	감액	2009. 11. 13.			-865,380	-173,080	-141,380		-1,179,840
	①소계 (2009. 11. 13.까지)				437,415,030	87,483,000	73,489,720	160,972,720	598,387,750
	환급	2009. 12. 9.				-87,483,000	-73,489,720	-160,972,720	
	증액	②2011. 4. 7.	596,615.46	840,689.95	545,532,980	109,106,590	175,607,060	284,713,650	
	가산세	③2012. 7. 18.			부과기준 본세액 438,280,410	87,656,080	119,985,030	207,641,110	
	합계				**982,948,010 (=①+②)**	**196,762,670 (=②+③)**	**295,592,090 (=②+③)**	**492,354,760 (=②+③)**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5, 45, 53, 54, 75, 77호증, 을 제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1) 과세권 조정절차의 흠결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총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법인세할 주민세액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세권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원고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과세권 조정절차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피고는 납부고지서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총액주의 적용 불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주민세액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근거나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이다. 이른바 조세소송에서의 총액주의는 기본적으로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조차 없어 총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미 부과한 주민세액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과세권 침해

원고는 [redacted]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참가인들에게 법인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나 경정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면적을 참가인들과 달리 계산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참가인들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5)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해 적용한 법령의 오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0조의5 제2항은 2006. 12. 30.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제1 지방세법 시행령과 통칭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따라서 2007. 4.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2007. 1. 1.부터 시행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제1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6) 연면적 산정의 오류

[redacted]사업장과 전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으로써 별지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아래와 같은 오류(아래에는 원고와 참가인들이 주장한 주요 내용을 설시하였고, 건축물, 시설물, 기계장치별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2 내지 9 각 산정표의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란 기재와 같다)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표4]

		2004	2005	2006	2007
피고 처분	[redacted]사업장(㎡)	602,814.21	769,645.68	727,884.117	596,615.46
	전체사업장(㎡)	928,653.49	1,102,054.52	1,044,611.03	840,689.95
	고지된 본세액(원)	529,182,550	918,795,740	747,165,490	982,948,010
원고 주장	[redacted]사업장(㎡)	488,732.18	495,315.29	468,232.75	378,528.12
	전체사업장(㎡)	848,457.61	1,176,727.43	1,122,785.56	960,296.14
	위법한 본세액(원)	300,499,790	전부(환급되어야 함)	전부(환급되어야 함)	전부(환급되어야 함)

가)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이란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토지와 별개인 물건을 의미하므로, 대지에 콘크리트만을 타설한 시설이나 돌망태를 올려놓은 시설은 부합의 법리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이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포장도로, 주차장, 석회석부두 등 콘크리트 타설물이나 흙으로 된 대지 위에 자재를 적재해놓은 야적장, 돌망태를 올려놓은 호안, 옹벽 등을 모두 시설물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나)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은 토지상에 정착된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지하에 매설된 시설이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시설을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장경계 밖에 있거나 경계로 쓰이는 시설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담, 옹벽, 도로경계턱이나 사업장경계 밖의 시설물을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라) 원고가 소유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시설물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마)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건축물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 기계장치는 건축물과 별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물이나 기계장치의 일부가 건축물 외벽 밖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더라도 그 돌출된 부분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증기배출구, 환풍구, 내부공기 배출구 등을 모두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바) 제방이나 댐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둔 형태의 시설물 중 바닥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지 않고 흙을 파낸 저수지나 연못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바다에 제방을 쌓아놓은 회처리장 등을 포함시켜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사) 다수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같은 지점의 상하에 위치하여 그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되고 중복된 부분은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redacted]사업장의 컨베이어설비, 취수장 내 기계장치, 케이블트레이 등 같은 지점의 상하에 위치하여 수평투영면적이 중복되는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아) [redacted]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로 송전하였으므로,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시설물 및 기계장치는 2007년분까지는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력 7, 8호기의 건축물, 시설물 및 기계장치를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자) 피고가 [redacted]사업장의 연면적 대상에 포함시킨 건축물, 시설물이나 기계장치 중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시설물이나 기계장치와 중복되는 경우, 면적을 과다하게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다.

차) 피고는 [redacted]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연면적을 산정하면서 어떠한 것인지 특정됨에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거나 중복되지 않았음에도 중복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경우가 있다.

카)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을 건축물, 기계장치와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이하 '수조 등'이라 한다)으로 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거나 수조 등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1)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심층취수로, 냉각수 취수장 앞 사다리꼴 모양 구조물,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 냉각수배수관로 등은 저장 기능이 없는 급배수시설로서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모두 수조로 보고 그 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였다.

(2) [redacted]사업장에 있는 상부댐유수지, 상부댐체, 상부댐체옹벽 및 [redacted]사업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에 있는 하부댐은 수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수조가 아닌 것으로 보고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1. 11. 정당한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9. 11. 11. 및 2009. 11. 13.자 납부고지에 따라 기납부된 가산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총 법인세할 주민세를 모두 납부한 점,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등'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redacted]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수정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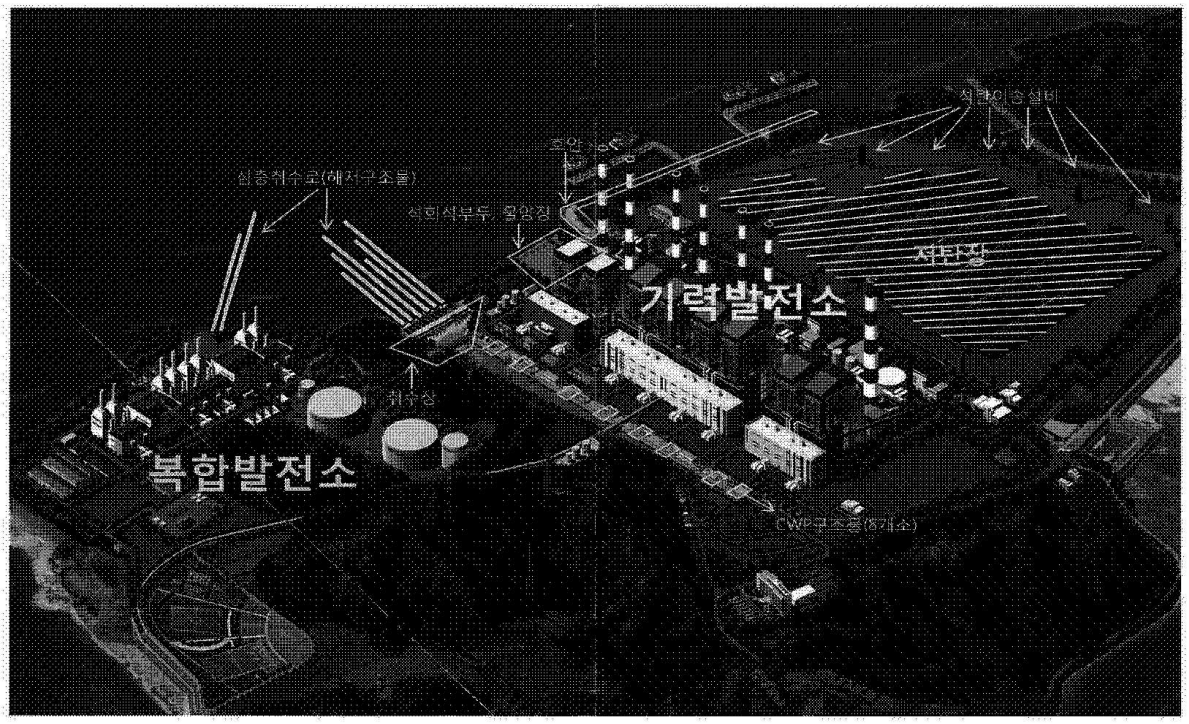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에 있는 [redacted]사업장은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력발전소(기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있음)와 기력발전 방식과 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결합한 복합발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배치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2)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 심층취수로는 발전소에 공급할 냉각수를 바다에서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해수가 유입되는 흡입구, 취수관로로 이루어져 있고, 취수장으로 이어진다. 취수관로는 해저면 부근에 약 130~150m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취수관로 끝에 있는 흡입구는 해저면 취수관로보다 3~5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취수관로로 흙이나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간조시에도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다.

취수장에는 펌프시설과 펌프시설로 양수한 해수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고 펌프시설 앞에는 사면이 약 19m 높이의 콘크리트로 연결되고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위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바다와 접한 콘크리트 벽면 아래 부분에 연결된 취수관로를 통해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 안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간조시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어 연결된 펌프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냉각수가 공급될 수 있다. 한편 취수장의 수조 양옆과 뒤로는 수조에서 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친 해수가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흘러갈 수 있게 연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냉각수 배수로가 있고,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의 바다 쪽 방면 앞에는 사면이 콘크리트로 연결된 형태는 아닌 둑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3)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는 복수기를 통과한 냉각수를 원활히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콘크리트 박스형 구조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냉각수배수로의 중간에는 해수가 복수기 방향으로 월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seal well)이 설치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박스 형태의 이 시설물에는 해수월류방지를 위한 둑(weir)이 있어 복수기 쪽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둑에서부터 해수면 방면으로 유속을 빠르게 증가하게 한다. 냉각수배수로의 바다 쪽 배출구 부분에는 바다로 배수하는 통로의 일부인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은 바닥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유속을 증가시키면서 소수력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4) 원고는 2005년경 [redacted]사업장의 기력 7, 8호기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기력 7호기는 2007. 5. 29. 수압시험, 2007. 11. 14. 보일러의 최초점화, 2008. 2. 4. 기력 7호기로 전기를 최초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는 계통병입을 거쳐 2008. 6. 16. 최종 준공되었고, 기력 8호기는 2007. 11. 20. 수압시험, 2008. 5. 15. 보일러 최초점화, 2008. 7. 21. 계통병입을 거쳐 2008. 12. 15. 최종 준공되었다.

5) [redacted]사업장과 [redacted]사업장은 양수발전소로 크게 상부댐, 하부댐, 지하수로터널, 지하발전소 및 송전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수발전소의 발전원리는 높은 곳에 상부댐, 낮은 곳에 하부댐, 상부댐과 하부댐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심야 시간대 등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유수지 물을 상부댐 유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상부댐 유수지의 물을 하부댐 유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로 흘려보내면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6)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액, 2003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와 위와 같은 건축물 연면적의 근거가 되는 [redacted]사업장의 복합발전소와 기력발전소의 각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물건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7)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과세물건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한 면적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3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 피고는 2009. 11. 11.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고지하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액,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기재된 주민세액과 가산세액은 표3의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각 납세고지액의 합계액과 같다)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와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합계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과세물건 총괄표가 첨부되었다.

9) 원고는 2009. 11. 11. 피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를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09. 11. 30. 위 수정신고를 이유로 위 2009. 11. 11. 및 2009. 11. 13.자 각 납부고지 세액 중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수정신고가 과세예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11. 4. 7. 위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을 취소하였다.

10)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7.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증액하는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인 법인세액,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액, 2003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피고가 산출한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피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와 종전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납세고지 당시와 달라진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각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물건명과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면적 산출내역 총괄표, 쟁점 대상 정정 현황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제1, 8, 10, 13, 21, 22, 23, 26, 28, 29, 32, 35, 50, 53, 54, 77호증, 갑나 제1호증, 갑다 제5호증, 을 제4, 22, 8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권 조정절차 흠결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행정자치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때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그 결정을 통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 그 결정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규범화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라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구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과세권 귀속에 관한 조정결정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위법 주장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피고가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과세표준,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그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쳤던 점, 2009. 11. 11.자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피고가 산출한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과 이를 기초로 안분한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내역서가 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부되어 있었던 점, 2011. 4. 7.자 납세고지서에도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거나 그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거과세 원칙 위반 및 총액주의 적용 불가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redacted]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각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출한 후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근거나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참가인들의 과세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참가인들이 관할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참가인들이 적용한 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참가인들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해 적용한 법령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세무서장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361,400원을 2007. 12. 31.까지 추가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한 날인 2007. 10. 8.에 성립하므로,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시행 중이던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시설물은 수조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연면적 산정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은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75조의2 제2호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 도크 · 조선대 ·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옥외주유시설 ·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 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8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규정하였다.

이후 위 규정은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 저유조 · 사일로 · 저장조 · 송유관 ·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종류가 제한되지 않았다가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범위가 수조 등으로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적용되는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연면적 산정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과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 '시설물' 등이 포함되고, 여기서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시설물'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정착된 구조물에 해당한다면, 그 구조물이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에 부합되었는지 또는 설치된 장소가 지상인지 지하인지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지에 콘크리트만을 타설한 시설이나 돌망태를 올려놓은 시설, 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도 위 규정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은 연면적 산정대상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등에 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는 주민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경계 밖에 있거나 사택, 합숙소 등 주거시설에 불과하여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되지 않는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등은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되는 한 위법하게 시공되었거나 소유권,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사업장의 경계를 이루는 담, 옹벽, 도로경계턱 등이나 사업장 내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는 호안, 옹벽, 경비시설 등도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인위적 정착 구조물에 해당하는 이상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표면적이 아니라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경우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은 이미 건물의 연면적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외부로 돌출되거나 옥상 또는 건물 외에 설치되어 건물의 연면적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이 산정되는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같은 지점에 상하로 중첩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 본 밑면적을 뜻하는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상 각각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연면적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수평투영면적만이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댐이나 제방 등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는 해당하나,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수조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참조), 원고가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redacted]사업장의 상부댐 및 [redacted]사업장의 하부댐이나 제방 등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발전시설에 필요한 물을 가두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거나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POND(연못), 저수지, 회처리장 등은 2004,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가 법인 소득을 발생시킨 각 사업장별로 법인의 소득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적절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안분하려는 취지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 건설한 시설은 사업을 위하여 실제 사용되어 소득 창출에 기여한 때부터 연면적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사업장 기력 7, 8호기는 2005년경 착공하여 각각 2008. 2. 4. 및 2008. 7. 21.에야 최초로 전기를 생산하여 외부로 송전하였으므로 이전까지 실제 사용되어 원고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력 7, 8호기 관련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은 2008년분 이전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시설물을 수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대상인 '수조'는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의미하고, 수원지에서 물을 취수하는 시설인 급수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서 사용한 물을 공공용 하수도나 하천, 바다 등으로 배수하는 배수시설, 그 밖에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송수관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redacted]사업장의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선 심층취수로 흡입구와 취수관로는 수원지인 바다에서 펌프시설이 연결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해수를 보내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 수조가 아니라 물을 취수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시설인 급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냉각수 취수장 옆 배수로의 구조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수로는 취수장 수조에서 넘친 물을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로 운반하는 것이 주된 용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조가 아니라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 앞에 있는 둑 형태의 구조물은 사면이 콘크리트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층취수로 흡입구, 취수관로와 취수장 옆 배수로, 위 둑 형태의 구조물은 모두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바닥면과 사면이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에 연결된 심층취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는 있으나 취수장 펌프로 해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간조에도 일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수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수장 구조물은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redacted]사업장의 냉각수배수로 내에는 해수의 월류를 방지하는 시설이나 소수력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구조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유속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2006,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을 위한 건축물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이상과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50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redacted]사업장 원고의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사업장별 개개의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에 관한 판단은 별지 2 내지 9 각 산정표의 '법원의 판단'란 각 기재와 같고, 그 증거는 해당 '입증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그 중 어떠한 건물 등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거나 연면적 산정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원고, 참가인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2 내지 9 각 산정표의 '쟁점'란에 '불특정', '기과세', '면적산출오류', '면적중복'이라고 기재된 건물 등의 해당 '법원의 판단'[2]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 참가인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표5] (단위 :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redacted]사업장	1,099,535.90	1,106,458.76	459,981.66	462,104.68
전체 사업장	1,798,943.79	2,161,379.86	865,192.85	756,024.34

7)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환급 후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

2) 편의상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하는 '법원의 판단'('내용', '인정면적') 부분을 음영으로 처리하였는데, '내용'과 '인정면적' 모두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한 경우에는 '내용'과 '인정면적' 모두에 음영 처리를, '내용'이나 '인정면적' 중 하나만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한 경우에는 그 달리한 부분에만 음영 처리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1호),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2호)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1. 11.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를 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인바,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신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2009. 11. 30.자 환급금결정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위 환급금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2. 7. 18.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취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2차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2차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정 기간은 당초 납세의무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하는 날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까지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의 잘못된 취소에 대한 결과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원활한 조세 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과처분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음을 알기도 어려우므로 환급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2차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일 이후부터 2차 부과처분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가산세 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2009. 11. 11.자 및 2009. 11. 13.자 납부고지에 따른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와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납부한 이후, 피고가 2009. 11. 30. 위 각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09. 12. 9. 원고에게 기납부액을 환급한 사실, 피고가 2011. 4. 7. 위 환급금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2005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한 사실, 피고가 2012. 7. 18. 위 환급금결정에 따라 기환급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의무지연일을 위 환급금결정 다음날인 2009. 12. 1.부터 위 가산세 부과처분 직전인 2012. 7. 16.까지 959일로 하여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7,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산정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의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문의 또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좀 더 합리적·객관적으로 분류·산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오로지 나름대로의 판단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이후 건축물 연면적 산정을 위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실측 과정에서도 거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액과 이 법원이 위 기간 동안의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본세를 기준으로 그 차액이 1,458,864,240원(= 373,347,650원 + 236,595,260원 + 240,236,770원 + 608,684,56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8) 소결론

가) 앞서 인정한 [redacted]사업장과 전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원고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액, 종업원수를 기초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원, 10원 미만은 [redacted]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사업연도	법인세액	종업원수(명)		사업장 면적(㎡)		안분비율(%)	법인세할 주민세
		[redacted]	전체	[redacted]	전체		
2004	82,199,154,958	774	1,993	1,099,535.90	1,798,943.79	49.9785	4,108,190,460
2005	73,176,884,032	807	2,030	1,106,458.76	2,161,379.86	45.4729	3,327,565,120
2006	61,390,627,439	882	2,160	459,981.66	865,192.85	46.9992	2,885,310,370
2007	76,034,697,741	940	2,191	462,104.68	756,024.34	52.0128	3,954,777,520

나) 위와 같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액 및 기납부한 세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2004년분,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가산세 포함)과 2006년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가산세 불포함)은 아래 [표7]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① 2009. 11. 13.자 2004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897,700,640원의 부과처분 중 633,720,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 4. 7.자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507,889,750원 중 412,243,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1. 4. 7.자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불포함) 747,165,490원의 부과처분 중 240,23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1. 4. 7.자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불포함) 982,948,010원의 부과처분 중 608,684,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사업연도	①신고납부할 세액	②기신고납부액	③차액 (=①-②)	④신고불성실가산세 (=③×0.2)	납부의무지연일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세액 (=③+④+⑤)	이 사건 증액처분 세액
2004	4,108,190,460	3,734,842,810	373,347,650	74,669,530	1,658일	185,703,120	**633,720,300**	897,700,640
2005	3,327,565,120	3,090,969,860	236,595,260	47,319,050	1,803일	128,329,260	**412,243,570**	1,507,889,750
2006	2,885,310,370	2,645,073,600	240,236,770				**240,236,770**	747,165,490
2007	3,954,777,520	3,346,092,960	608,684,560				**608,684,560**	982,948,010

※ 납무의무지연일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일 다음날인 각 사업연도 다음해 5. 1.부터 증액경정처분일까지의 일수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③ 차액' × 0.03% × 납부의무지연일

다) 위와 같은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액과 앞서 본 '2. 라. 7)의 가)항 환급 후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것과 같이 2012. 7. 18.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2006년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액은 아래 [표8]의 '정당한 가산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2006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67,565,820원의 부과처분 중 151,68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분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492,354,760원의 부과처분 중 317,48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8]

사업연도	① [표7]의 '③ 차액 (정당한 본세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액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①×0.2)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가산세액 (=④+⑤)
		일자	부과기준 본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총액			
2006	**240,236,770**	2011. 4. 7.	483,761,400	96,752,280	208,839,790	305,592,070		103,638,140	
		2012. 7. 18.	263,320,700	52,664,140	109,309,610	161,973,750		위법 취소	
		합계		**149,416,420**	**318,149,400**	**467,565,820**	48,047,350	103,638,140	**151,685,4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2007	**608,684,560**	2011. 4. 7.	545,532,980	109,106,590	175,607,060	284,713,650		195,752,950	
		2012. 7. 18.	438,280,410	87,656,080	119,985,030	207,641,110		위법 취소	
		합계		**196,762,670**	**295,592,090**	**492,354,760**	121,736,910	195,752,950	**317,489,860**

※ 2006년 납부불성실가산세 103,638,140원 = 240,236,770원 × 2007. 5. 1.부터 2011. 4. 7.까지 1,438일 × 0.03%
※ 2007년 납부불성실가산세 195,752,950원 = 608,684,560원 × 2008. 5. 1.부터 2011. 4. 7.까지 1,072일 × 0.0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 \text{법인세총액} \times \left\{ \left(\frac{\text{당해 시·군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right\}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 \text{법인세총액}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 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17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redacted]시 시세 조례(2010. 3. 30. 조례 제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세율)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끝.